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위기로 각종 모임이 제한되어 불가항력적으로 시설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권고의결을 통해 공공시설의 대관료 환불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대관자에 대한 불공정·불편 요인을 제거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경우에도 대관료 반환과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분쟁 소지 및 재산권 침해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세부적 환불기준을 신설하여 손해가 없는 시점까지 전액 환불, 사용일 전 또는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위약금 성격의 금액(대관료의 10%)만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대관료 반환 규정 및 그 세부 기준을 신설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